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개편하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의 구체화 및 창업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 (안 제5조의8, 9)

① (구매 목표비율) 창업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

* 공공구매 목표비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1%

② (창업 확인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3년)을 정하고, 창업확인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구체화하고,

* (유효기간) 중소기업 1년, 여성기업 3년, 장애인 기업 3년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확인절차 상세 사항의 고시 위임 등 규정

나. 창업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안 제2조, 제3조)

- ① (창업범위) 개념이 불명확한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명확하게 제시

* ① 상속·증여로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③ 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타법인 설립

- 폐업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폐업후 창업 인정기간 (3년, 부도·파산은 2년) 설정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 ② (사업개시일 명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및 조직형태 변경 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변경 후 기업의 창업일로 의제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안 제8조의2, 3)

- ① (구성) 구성인원 확대 (20 → 25명),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및 창업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 ② (기능) 협업 방안 (사업)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부처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기능에 포함

라. 기타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사항 (안 제29조의2, 제32조)

- ① (절차 간소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시장·군수 등이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여러 부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
- ② (업무위탁)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 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29. ~ 8. 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일부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
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세분류”를
“세세분류”로 한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
하는 것

2.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②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

유하는 경우

3.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비율은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4.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유지한 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으로 본다. 다만,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이 조직변경 후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4. 개인사업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제5조의8 및 제5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비율)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8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이 비율을 제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한 8퍼센트에는 중소기업의 수입·유통 제품이나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가공 제품은 제외한다.

제5조의9(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은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가 1회 발생한 경우 3개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

2. 창업기업 여부 확인

3.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

4. 그 밖에 창업기업 확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업기업 확인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및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협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의3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3항 중 “알려야”를 “알려 주고 부담금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창업자를 대신하여 부담금 부과기관에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0. 10. 8.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 ----- <u>해당하는</u> ----- -----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 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 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u>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 업을 개시하는 것</u>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 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인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u>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 는 것</u>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 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 비율은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4.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유지한 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으로 본다. 다만,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 세세분류-----
-----.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사업의 개시일) -----

-----.

1. 2. (현행과 같음)

3. 법인이 조직변경 후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4. 개인사업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비율)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8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이 비율을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

<신 설>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한 8퍼센트에는 중소기업의 수입·유통 제품이나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가공 제품은 제외한다.

제5조의9(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은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가 1회 발생한 경우 3개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u> <u>2. 창업기업 여부 확인</u> <u>3.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u> <u>4. 그 밖에 창업기업 확인을 위</u> <u>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u> <u>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u> <u>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u> <u>기 위해 창업기업 확인전자시스</u> <u>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u> <u>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u>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u> <u>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u> <u>여 고시할 수 있다</u>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	-----
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	-----
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 <u>25명</u> -----
구성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③ -----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	1. -----
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	-----

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및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

-----.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u>알려야</u> 한다. ④ (생략)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⑤ ~ ⑦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알려 주고 부담금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창업자를 대신하여 부담금 부과기관에 신청하여야</u>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업무</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연 락 처	(042) 481 - 4384